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
의견서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간의 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민변은 2019년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9월에는 <민변 2019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입법감시의견서>는 지난 9월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주요 개혁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의견을 제출함과 동시에 입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 ‘입법 적극저지 법안’도 함께 담아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에 담긴 11개의 입법 적극저지법안과 15개의 입법 적극촉구 법안에 관한 우리 모임의 의견이 2019 정기국회 및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모쪼록 기여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견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민변의 11개의 위원회와 1개의 연구모임에서 고생을 해주셨으며, 전반적인 조율작업을 해주신 ‘민변 개혁입법과 감시TF’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목 차

입법 적극저지 법안

- 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7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29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개인정보보호법 등(빅데이터 3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입법 적극촉구 법안

- 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재정신청 제도확대)
- 5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61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모자보건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 74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8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9 사립학교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민주화 3법)
- 9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적극저지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국내 거주 이주민의 노동권을 포함한 권리 보장
- ❖ 담당 검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2018년 6월 480여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을 한 이후부터 국내에는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이 강화되고 있음.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여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강화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법무부는 이주민에 대한 혐오 등 높아지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대신 2018년 8월부터 제주도 무비자 입국 불허 국가를 12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배경에서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동향을 임의로 조사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취지의 법률안 개정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이나 인권 침해에 대한 논의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음. 한편 외국인의 출입국을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농어업 분야에서는 국내 노동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외국인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이미 노동력이 극히 취약한 농어업 분야에서 아무런 노동권 보장제도 없이 단기간동안 이주노동자의 노동력만을 취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는 국내 이주인권단체들과 함께 2018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이주단체들과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이행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

속적으로 사안 대응을 해오고 있음. 또한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에서도 국내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명 발표 및 연대 등을 이어 오고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 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553) (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965)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454) (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909)</p>
<p>소관상임위</p>	<p>법제사법위원회</p>
<p>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p>	<p>(1) 2019. 7. 19. 조응천 (자유한국당) (2) 2019. 8. 13.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3) 2019. 9. 11. 황주홍 (민주평화당) (4) 2019. 10. 17. 신동근 (더불어민주당)</p>
<p>주요내용</p>	<p>(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553) 무사증입국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주도 집단 난민신청 등 무사증입국 외국인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출입국심사업무 부담이 과부하되고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함.</p> <p>(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965) 국내 거주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조사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p> <p>(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454)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기간만을 정해 두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인바,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함.</p>

	<p>(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909) 현행법상 외국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받아 입국한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외국인이 실제로 고용추천 분야에서 활동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추천서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에게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함.</p>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 (1) 관련 : 무사증입국제도를 운영한 취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이며, 그 취지상 제도의 적용 여부는 소관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음. 한편 위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특정 외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자의적으로 금지하고 사전여행허가를 받도록 강제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외 국적자의 입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위 개정안은 저지되어야 함.
- 개정안 (2) 관련 : 외국인 동향조사는 출입국관리공무원과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등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행정절차임. 그러나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외국인 동향조사를 수행할 때에 헌법상 보장된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와 단속을 하고, 이에 관하여 사업주와 외국인 거주자 등에게 어떠한 사전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아 영업방해, 인권침해 등 많은 피해와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¹⁾ 이에 따라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상의 ‘외국인 동향조사’는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기도 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1) 대한변호사협회 2015년도 인권보고서, 153-154쪽

- 위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외국인 동향조사의 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자인지를 조사하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소극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포함하여 외국인 출입국관리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함. 위에서 지적된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의 폭압적인 외국인 동향조사가 시행되었던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 동향조사의 조사범위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명문화되지 않아 소극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이해하기 어려움. 나아가 위 개정안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잠재적인 강제퇴거 대상자로 낙인찍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 재량행위에 불과한 조사행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위 개정안은 저지되어야 함.

- 개정안 (3) 관련 :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²⁾ 2015년 시범 실시되고 2017년부터 전국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이주노동 관련 단체는 일찍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명시적인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위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음.³⁾ 위 제도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의 위헌적 요소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존중하기는커녕 국내 농어촌 작업일정에 따라 사용하는 ‘부품’으로 취급할 우려가 있음.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관할하는 노동부는 계절근로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자료가 없다고 한 바 있음.⁴⁾ 이미 농어촌 현장에서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3만 명 넘게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별도로 신설하려는 위 개정안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취약하게 할 뿐이므로 저지되어야 함.

- 개정안 (4) 관련 :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예술흥행·특정활동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한편 위 개정안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고용추천서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에게 분기별로 국내체류활동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

2) <http://www.moj.go.kr/moj/194/subview.do>

3) <http://nodong.org/statement/7200864>

4) <http://ijunodong.org/focus/3983>

편의주의에 기인한 제안이자 국내 거주 외국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자료 수집이 아닐 수 없음. 나아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업무를 관할할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틀을 제공할 위험이 있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의 활동내역을 분기별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불법’으로 분류하고 사증발급허가를 취소한다면 오히려 미등록 이주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존재하는바 위 개정안은 저지되어야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근로시간 관련)

- ❖ 정책 목표: 근로시간관련 개악입법 저지
- ❖ 담당 검토: 민변 노동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한국의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92시간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 28개국 중 2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사회 임금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최근 52시간 근로제가 (비로소 그 본질대로) 시행되는 등 근로자들을 과도한 연장근로 및 연속근로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의 예외로 존재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정을 통하여 연장근로를 특정기간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연장된 근로시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시간의 확장을 도모하거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등으로, 근로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여 임금 근로자의 장시간근로를 가능케 하는 입법적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화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역시 존재한다.
-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가 임금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 및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있는 만큼, 근로시간의 적절한 제한은 중대한 법적 원칙이고, 연장근로 등은 그 예외로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시간 제한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 그 성립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근로시간 제한의 취지를 침해하려는 개정법률안을 적극 저지할 필요가 있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3140, 2013143, 2014740, 2016253, 2019069)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4249, 2015046) (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인가승인요건 완화 / 2014284, 2015168, 2015436)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확대 / 2014996, 2014740, 2022918) (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2014725)</p>
<p>소관상임위</p>	<p>환경노동위원회</p>
<p>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p>	<p>(1) 2013140 - 2018. 4. 18. / 신보라(자유한국당) 2013143 - 2018. 4. 19. / 추경호(자유한국당) 2014740 - 2018. 8. 3. / 송희경(자유한국당) 2016253 - 2018. 11. 1. / 김학용(자유한국당) 2019069 - 2019. 3. 8.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2) 2014249 - 2018. 7. 6. / 추경호(자유한국당) 2015046 - 2018. 8. 27. / 안상수(자유한국당) (3) 2014284 - 2018. 7. 9. / 추경호(자유한국당) 2015168 - 2018. 8. 30. / 박대출(자유한국당) 2015436 - 2018. 9. 11. / 송언석(자유한국당) (4) 2014996 - 2018. 8. 23. / 나경원(자유한국당)</p>

	<p>2014740 - 2018. 8. 3. / 송희경(자유한국당) 2022918 - 2019. 10. 18. / 오영훈(더불어민주당)</p> <p>(5) 2014725 - 2018. 8. 2. / 김동철(바른미래당)</p>
<p>주요내용</p>	<p>(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3140, 2013143, 2014740, 2016253, 2019069)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취업규칙에 의한 경우(현행 2주 이내)에는 1개월 이내(2013140, 2013143) 혹은 3개월 이내(2016253) 6개월 이내(2014740),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현행 3개월 이내)에는 1년 이내(2013140, 2013143, 2014740, 2016253)로 각각 확대함(안 제51조), 기존 탄력적 근로시간제 외에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함(2019069, 안 제51조의2)</p> <p>(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4249, 2015046)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현행 1개월 이내)을 3개월 이내(2014249) 혹은 6개월 이내(2015046)로 확대함(안 제52조)</p> <p>(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근로 인가승인요건 완화 / 2014284, 2015168, 2015436) - 고용노동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요건에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함(2014284 안 제53조 제4항)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연장 허용함(2015186 안 제53조) - 상시 300명(현행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연장 근로시간의 상한으로부터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2015436 안 제53조 제3항)</p> <p>(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확대 / 2014996, 2014740, 2022918) -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걱정 휴게시간의 부과 의무(근로기준법 제5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보육시설</p>

	<p>운영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상 2014996) 혹은 정보통신업 중 소프트웨어 개발업 및 정보서비스업(2014725)을 포함시킴(안 제 59조 제1항 제6호, 제7호).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 예외 업종에 농산물 등의 선별·세척·건조·포장 등의 처리사업을 포함시킴 (2022918 안 제63조 제4호)</p> <p>(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2014725) -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징역형을 제하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함(안 제110조 제2항)</p>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 개정안 (1) 관련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간(40시간) 및 1일 간(8시간) 근로시간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인데, 평균의 산정이 되는 기준기간을 늘리면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바, 현행법 하의 적용기간(취업규칙에 의한 경우 2주 이내, 노사 간 서면합의에 의한 경우 3개월 이내)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2) 관련 :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간(40시간) 및 1일 간(8시간) 근로시간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0조)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인데, 평균의 산정이 되는 기준기간을 늘리면 특정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근로가 가능해져 근로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바, 현행법 하의 정산기간(1개월 이내)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3) 관련 : 연장된 근로시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제4항)은 근로시간 제한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만 허용함이 타당하다. 발의된 안들은 연장근로의 인가승인 요건과 관련하여,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4284), '사용자는 사업장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2015186) 등으로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현행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을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확대적용(2015436)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장근로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들이어서,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2014284)하거나, 근로자의 부동의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을 금지(2015186)하는 등의 담보장치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예외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예외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까지 연장근로의 시행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적극저지의 필요성이 있다.

- 개정안 (4) 관련 :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및 적정 휴게 시간 부과(근로기준법 제54조)는 과도한 연장근로 및 연속근로를 방지하여 합리적인 근로시간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 특정 업종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예외를 확대하는 취지의 위 개정안들은 타당하지 않다.
- 개정안 (5) 관련 : 기본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의 경우에 대한 형벌 중 징역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을 두면서 벌금의 상한도 1천만 원 이하로 하향하는 것은, 근로시간 제도의 규범력을 중대하게 약화시켜 근로자들을 장시간근로에 노출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한 현행과 같이 처벌의 수준을 유지하여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최저임금제도 개악 저지
- ❖ 담당 검토: 민변 노동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2019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월 환산액 1,745,150원)으로 결정되어 전년(시간당 7,530원) 대비 10.9% 상승하였다. 인상률로만 따지면 2017년(시간당 6,470원)에서 16.4% 상승한 2018년(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최초로 시간당 8,000원을 초과하는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논란이 뜨겁다.
-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며 이를 반대하는 조직적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고, 국회에서도 2019년 최저임금 책정을 전후로 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지역별·국적별로 달리 한다든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저임금의 결정주기를 연장한다든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하향한다든지 하여, 최저임금 제도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향의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
- 그러나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고려하면(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억제하려는 위와 같은 개정안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중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적극 저지되어야 할 것이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차등 결정 (2014371, 2014585, 2014826, 2014827, 2014836, 2015000, 2015380, 2015435, 2014819, 2021025)</p> <p>(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2086, 2014825, 2015000, 2016786)</p> <p>(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저임금 지급여부 판단 위한 시간산정 조정 (2015380, 2016786)</p> <p>(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주기 연장 (2012052, 2012061, 2014825, 2014836)</p> <p>(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2014723)</p>
<p>소관상임위</p>	<p>환경노동위원회</p>
<p>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p>	<p>(1) 2017371 - 2018. 7. 12. / 추경호(자유한국당) 2014585 - 2018. 7. 27. / 홍일표(자유한국당) 2014826 - 2018. 8. 10. / 강효상(자유한국당) 2014827 - 2018. 8. 10. / 이연주(바른미래당) 2014836 - 2018. 8. 10. / 이현재(자유한국당) 2015000 - 2018. 8. 23. / 박대출(자유한국당) 2015380 - 2018. 9. 7. / 윤상직(자유한국당) 2015435 - 2018. 9. 11. / 송언석(자유한국당) 2014819 - 2018. 8. 9. / 엄용수(자유한국당) 2021025 - 2019. 6. 18. / 송석준(자유한국당)</p> <p>(2) 2012086 - 2018. 2. 22. / 신보라(자유한국당) 2014825 - 2018. 8. 10. / 김학용(자유한국당) 2015000 - 2018. 8. 23. / 박대출(자유한국당) 2016786 - 2018. 11. 23. / 권은희(바른미래당)</p> <p>(3) 2015380 - 2018. 9. 7. / 윤상직(자유한국당)</p>

	<p>2016786 - 2018. 11. 23. / 권은희(바른미래당)</p> <p>(4) 2012052 - 2018. 2. 20. / 윤한홍(자유한국당) 2012061 - 2018. 2. 21. / 박성중(자유한국당) 2014825 - 2018. 8. 10. / 김학용(자유한국당) 2014836 - 2018. 8. 10. / 이현재(자유한국당)</p> <p>(5) 2014723 - 2018. 8. 2. / 김동철(바른미래당)</p>
<p>주요내용</p>	<p>(1)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근로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차등 결정 / 2014371, 2014585, 2014826, 2014827, 2014836, 2015000, 2015380, 2015435, 2014819, 2021025) -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의 업종 및 규모,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 근로자의 국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개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함(최저임금법 안 제4조 및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안 제25조의2)</p> <p>(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12086, 2014825, 2015000, 2016786) - 정기적 상여금, 숙박 또는 식사에 대한 대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 그동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던 부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함(안 제6조)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전적으로 새로이 조정함(2015000 안 제6조)</p> <p>(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지급여부 판단 위한 시간산정 조정 / 2015380, 2016786) - 최저임금 지급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함(안 제5조의2)</p> <p>(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결정주기 연장 / 2012052, 2012061, 2014825, 2014836) -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 제1항)</p> <p>(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완화 / 2014723) - 최저임금 위반(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p>

	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에 대한 형자처별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징역형을 제하고 벌금형도 사업장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함(안 제28조 제1항)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 개정안 (1) 관련 :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취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인바(최저임금법 제1조), 이러한 취지가 사업자가 행하는 사업의 업종 및 규모 혹은 사업이 행해지는 지역, 근로자의 국적 등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없다. 예외의 허용은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탈법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임금의 최저수준”은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업종별·규모별·지역별·국적별 차등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위 개정안은 적극 저지되어야 한다.
- 개정안 (2) 관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각호와 그 위임을 받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은 상여금, 식사·숙박 제공, 유급휴일 근로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고정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상, 지급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나(상여금),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거나(식사·숙박 제공), 소정근로에 대한 것이 아닌(유급휴일 근로수당)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안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무단히 확장함으로써 단지 사용자들의 부담만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인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그 산입범위를 전적으로 달리 규정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개정안 (3) 관련 :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단위시간(소정근로시간)당 지급한 임금이 증대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유급휴일 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 또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유급휴일을 포함한 시간에 대하여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

- 개정안 (4) 관련 :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있는 이상, 매년 상승하는 물가 등 해당 년도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하도록 산정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최저임금 산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근로자의 최저임금만이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무력해질 우려가 있는바, 현행과 같이 1년 단위의 최저임금 산정이 적절하다.
- 개정안 (5) 관련 :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삭제하여 벌금형만을 둘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해야 할 벌금과 지급해야 할 최저임금의 경중을 따져 최저임금을 위반할 유인을 제공하게 될 수 있어,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소속 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제재의 차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 역시 타당하지 않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노조할 권리 보장
- ❖ 담당 검토: 민변 노동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ILO(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1948)’ 및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1949)’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 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ILO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위 ILO 핵심협약을 선비준한 후 후속 입법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할지, 현행 법령을 개정한 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오고 갔으며, 이와 별도로 정부 및 국회는 ILO 핵심협약의 수준에 맞게 국내 법령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도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입법안을 상정하였다.
- 그러나 해당 입법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의 관계 법령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두고 있는 제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은 ILO의 권고 취지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 개악 / 2019749, 2022801)</p> <p>(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태양에 대한 규제 / 2020717, 2020784, 2020750)</p> <p>(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교섭권 제한 / 2022802)</p> <p>(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교섭권 제한 / 2022800)</p> <p>(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 허용 / 2019744)</p>
<p>소관상임위</p>	<p>환경노동위원회</p>
<p>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p>	<p>(1) 2019749 - 2019. 4. 11. / 추경호(자유한국당) 2022801 - 2019. 10. 4. / 정부</p> <p>(2) 2020717 - 2019. 5. 30. / 신보라(자유한국당) 2020784 - 2019. 6. 3. / 신보라(자유한국당) 2020750 - 2019. 5. 31. / 신보라(자유한국당)</p> <p>(3) 2022802 - 2019. 10. 4. / 정부</p> <p>(4) 2022800 - 2019. 10. 4. / 정부</p> <p>(5) 2019744 - 2019. 4. 11. / 추경호(자유한국당)</p>
<p>주요내용</p>	<p>(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제도 개악 / 2019749, 2022801)</p> <p>-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쟁의행위 가능기간 단축, 사업장 내 시설 점거 쟁의행위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삭제, 노조가입 및 파업참가 강요 부작위 의무 부과,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철폐 등 (2019749)</p> <p>- 실업자, 해고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노조활동 제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유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유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2022801)</p> <p>(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태양에 대한 규제 / 2020717, 2020784,</p>

	<p>20207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중지명령 권한 부여(2020717 안 제42조 제3항),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관련하여 노동조합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부여(2020784 안 제28조 제1항 제5호),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상한선 상향(2020750 제88조 및 제89조) <p style="text-align: center;">(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교섭권 제한 / 20228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유지 <p style="text-align: center;">(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교섭권 제한 / 20228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 강제 유지 <p style="text-align: center;">(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파견근로 허용 / 20197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금지 규정 삭제(안 제16조 제1항 삭제) 및 원칙적 파견금지 업종에도 쟁의행위 중일 경우 파견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 개정안 (1) 관련 : 2019749 개정안의 경우 현행 노조법이 협력적 노사관계보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제도들로 점철되어 있어 사용자들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노동조합 쟁의행위 기간의 제한(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 시설점거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금지 규정 삭제,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규제 강화와 사용자에게 대한 규제 약화 등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한 제한을 현행 노조법보다 강화하는 취지의 안이어서,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을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노조법의 입법취지(제1조)는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한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시정코자 하는 노동법의 존재의의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다. 2022801 개정안은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결권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의 조합활동 제한, 임원자격 취득 제한, 근로시간면제·교섭창구단일화·쟁의행위투표 등에 있어서의 수 산정 제외 등 노동기본권의 본질적인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이다. 나아가 위 2019749 개정안처럼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연장하고 쟁의행위의 형태를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어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

- 개정안 (2) 관련 :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노조법 제2조 제6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불균등한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당사자 사이의 자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의 법적 개념 자체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의 저해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개정안들과 같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하여서만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2020717), 특정 쟁의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권한(2020784)을 부여하는 것인 노동기본권의 보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노조법을 더욱 후퇴시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나아가 쟁의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 모두인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정(2020750)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개정안 (3) 관련 :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는 내용은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의 충분한 발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협약 제2조 2.항은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의 원조 기타 다른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이른바 ‘어용노조’에 대하여서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간섭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개정안 (4) 관련 :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에 의해 고용조건을 규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하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형해화하는 내용은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의 충분한 발달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협약 제2조 2.항은 “특히 근로자단체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의하여 지배되는 근로자단체의 설립을 촉진하거나 또는 근로자단체에 재정상의 원조 기타 다른 원조를 하는 행위는 이 조가 의미하는 간섭행위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은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이른바 ‘어용노조’에 대하여서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간섭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 개정안 (5) 관련 : 노조법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가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대립당사자의 무기 대등을 이루고자 함이다. 파견법 도입 시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쟁의행위 중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심지어 근로자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근로자파견을 가능케 함으로써, 해당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전적으로 무력화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형해화하는 위헌적인 입법으로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 ❖ 정책 목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저해하고 실효성 없는 북측 회담대표 임명 철회 제도 도입 반대
- ❖ 담당 검토: 민변 통일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남북은 2018년을 맞으며 관계개선을 시작하였고, 그 가운데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2018. 2. 25. 방남함.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방한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영철이 천안함 침몰의 배후라는 이유로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 남단을 차량으로 차벽을 세워 막고 연좌농성을 벌임.
-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위 방남 일정 중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였고, 그 답방 형식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남측 대표단이 2018. 3. 5.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하고 그 해 4월말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함.
- 자유한국당 소속 신보라 국회의원은 2018. 3. 8.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등의 사람이 북측에서 임명되었을 경우, 정부가 북측에 임명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본건 법률안을 발의 함.
- 2018. 4. 27.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되고,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4.27 판문점선언을 발표함.
-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2018. 9. 뉴욕을 방문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과 회담하고, 2019. 1.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등 남측과 미국 등을 오가며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관한 외교적 역할을 담당함. 미국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방미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거나 특사 교체를 요구하는 주된 여론은 없었음.

-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방남 저지 활동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했고,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유해했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본건 법률안과 같이 북측에 특별사절 등의 교체를 요구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협상의 상대인 북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문제가 있고, 남북협상에 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남북관계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389)
소관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2018. 3. 8. 신보라 (자유한국당)
주요내용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사람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이 되거나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5조의2 제1항) 그러한 사람이 북한 측에서 임명되었을 때에는 정부가 북측에 그 철회 등을 요청함(안 제15조의2 제2항)

나. 검토의견

- 본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2 제1항이 남북회담대표나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때 임명권자가 남북관계나 국가안전

보장 등을 당연히 고려하는 것이 책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하였고, 안 제15조의2 제2항이 정부가 회답을 개최 여부를 판단하면서 북측 회담대표 등이 장래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할 사람인지 여부도 판단하고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면 회담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임.

- 통일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국제 법령 및 관례상 정부대표 등의 파견과 관련하여 사전에 조율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대측 회담대표 등의 임명에 대해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남북협상 추진 여부, 방향, 협상 담당자에 관한 국민들과 정치권의 의사는 자유롭게 표현되고 논쟁될 필요가 있다하더라도 정당, 특히 야당은 국회를 통하여 해당 국무위원 해임 결의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별도의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본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고, 통일부의 의견과 같이 국제 관례에 맞지 않으며 부적절함. 남북 협의과정을 방해하려는 일시적·정치적 목적 이외에 다른 발의 목적을 찾기 어렵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방해할 소지가 있음.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남북협상 권한을 축소시켜 원활한 협상을 방해할 수 있음. 결국 본 법률안은 이와 같은 이유로 입법 저지 대상 법안이라고 할 것임.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 정책 목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를 무효화하고자 하는 특별조치법안의 입법 반대
- ❖ 담당 검토: 민변 통일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2018. 9. 19.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남측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공포 절차를 거쳤음.
- 위 9.19. 군사분야합의서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며, 남북간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고,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남북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로서 의의를 가지며, 국방부 또한 지난 1년간 9.19 군사분야합의를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의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음.
- 무소속 이연주 국회의원이 2019. 1. 30. 『9. 19 군사분야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하여 북측과 재협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본건 법률안은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간의 신뢰형성 및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과 시대적 당위에 역행하는 것임.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18426)
소관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 의 (소속정당)	2019. 1. 30. 이언주(무소속)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9.19 군사분야합의서는 국회비준없이 행하여졌음. 9.19군사분야합의서를 무효로 하고, 정부는 9.19군사분야합의서의 문제점 및 향후 조치방안 등을 마련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하여 북한 당국과 남북한 군사분야에 관하여 재협의하도록 함.

나. 검토의견

- 9.19 군사분야합의서를 새로 제정하는 법률로써 무효화한다면 판문점 선언과 그 이후 진행된 분야별 남북간 합의의 의미, 그리고 진행과정에서 형성된 신뢰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노력 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본 법률안은 입법 저지 대상 법안이라고 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개발 사업에 따른 국민의 환경권 침해 방지
- ❖ 담당 검토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 시기 환경부는 환경 적폐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수방관하였던 것과는 달리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217건의 부동의를 한 바 있으며, 박근혜(2013. 2. ~ 2017. 5.) 정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 결과 부동의 사례가 4년여 기간 동안 18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저조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 5.부터 현재까지 환경부는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국민의 환경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한 결과 아래와 같이 283건의 사업에 대한 부동의 협의를 함.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2019. 9. 26. 인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외 19건	2016. 9. 12.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외 12건	217건
환경영향평가	2019. 9. 16. 오색삭도 설치사업 외 11건	2건	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019. 10. 16. 문경시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조성사업 외 252건	2017. 2. 14. 내성천 영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외 1건	5건
합계	283건	18건	222건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당해 사업,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헌법이 부여한 자연환경유지 및 보호의무를 법률상 구현한 제도로써, 이를 주관하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통계와 같이 일부 전직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개발우선 정책 등에 치우쳐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 이에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보완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행정운영이 유지될 것이 불확실하기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실질화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오히려 요구되고 있음.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963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 (소속정당)	2019. 10. 23. 이양수(자유한국당)
주요내용	<p>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서 검토를 위한 협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 협의내용을 일정 기간 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p> <p>그런데 협의내용의 핵심인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세 가지의 협의결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인 환경부예규에 규정되어 있어 환경부가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도 행정규칙인 예규를 근거로 ‘부동의’ 평가를 하여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 비대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가로 막고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협의내용의 결과를 ‘부동의’를 제외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p>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저지

- 동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에서 환경부가 해당 개발 사업의 환경적 악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협의결과로 부동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제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임.
- 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는 개발행정절차를 저지시킬 사전예방수단으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무력화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파괴는 물론, 개발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음.
- 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수 국회의원은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치적 행위라 할 것임.
- 이에 동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자연환경 보전 및 국민의 환경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적극적저지를 분명히 하며,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여야 할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처벌연령 하향반대)

- ❖ 정책 목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무분별한 하향 방지를 통한 사법절차에서의 아동 인권 보호
- ❖ 담당 검토: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일부 청소년들의 집단폭행 등 잔혹한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엄벌주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현행 「형법」상 14세로 되어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이에 맞추어 소년법상의 촉법소년 연령도 동시에 하향하려는 입법을 추진하였음.
- 이와 더불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사형·무기징역과 같은 중형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들도 다수 계류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입법 정책은 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고, 소년사법 정책의 중요한 가치인 소년의 상처 회복과 사회복귀라는 측면을 거의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2019. 10. 2. 국무총리실 공식 블로그에서 중학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4)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5)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21)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9)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34)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37)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1) 2017. 9. 7. 장제원 (자유한국당) (2) 2017. 9. 8.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3) 2017. 9. 8. 김도읍 (자유한국당) (4) 2017. 9. 13. 박덕흠 (자유한국당) (5) 2018. 9. 5. 강효상 (자유한국당) (6) 2019. 1. 4.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164)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하향 (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215)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하향 (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21)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하향 (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319)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334) 현행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37) 살인, 강간죄에 한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3세로 하향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 저지

- 범법행위를 저지른 아동이 성인과 같이 형사사법절차에 바로 편입되지 않고 보호처분 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소년사법 정책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그러한 소년사법 정책의 대상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① 만 10세~13세가 저지르는 강력범죄 비중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 ② 교육제도 및 미디어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인간이 성숙해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점, ③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 정도임.
- 위 통계자료는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에서 만 10~13세가 행한 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수치도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려움(2012년 12%, 2013년 12%, 2014년 14%, 2015년 13%, 2016년 15%). 오히려 전체 소년범죄자 중에서 14세 미만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2008년 2.8%, 2009년 1.8%, 2010년 0.4%, 2011년 0.4%, 2012년 0.8%, 2013년 0.5%, 2014년 0.04%, 2015년 0.1%, 2016년 0.1%), 소년 보호 사건에서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2007년 15.3%, 2008년 14.8%, 2009년 14.8%, 2010년 13.2%, 2011년 11.2%, 2012년 14%, 2013년 13.6%, 2014년 11.8%, 2015년 11.6%, 2016년 12.2%, 2017년 13.8%, 2018년 13%).
- 범죄 수법의 흉포화 지적 또한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와 사회적 관심에 따라 과장된 것으로 보아야 함. 소년 강력범죄의 연령층별 현황에 따르면 14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줄어들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2007년 10명(0.5%), 2008년 18명(0.6%), 2009년 20명(0.6%), 2010년 12명(0.4%), 2011년 6명(0.2%), 2012년 37명(1.3%), 2013년 18명(0.7%), 2014년 1명(0.0%), 2015년 1명(0.0%), 2016년 3명(0.1%)).

- 교육제도나 미디어를 근거로 과거에 비해 미성년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다는 주장은 성급한 단견이라 할 것임. 도덕성 행동발달이론 등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소년의 도덕적 행동은 연령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2, 13세로 하향될 경우 그 영역대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형사처벌을 통한 낙인 강화와 심리적 상처, 범죄수법 학습로 인해 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 촉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크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미국의 형사이송제도와 일본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같은 처벌 강화 일변도의 정책은 모두 소년 범죄의 예방과 감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서는 ‘아동의 감성, 정신, 지능의 성숙도에 기반을 두고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을 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바탕을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0호(2007)에서는 형사책임 연령을 12세 아래로 낮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이러한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은 모든 범죄에 있어서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2019)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더욱 발전시켜 아동의 두뇌 발달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의 최소 연령을 14세 이상 유지하고 그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였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에 설정된 최소 연령을 낮추지 말 것을 촉구하였으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의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촉구한 바 있음. 위 형법 일부개정안들은 이러한 국제 인권 규범의 추세와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아동 인권 현실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 모임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그 이하로 하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모두 반대하며, 그와 더불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소년에 대한 사형, 무기징역의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동일한 취지에서 반대함. 오히려 국가는 소년원에 수용되었거나

그 외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소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개선하여 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임.

개인정보보호법 등(빅데이터 3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및 통제권한 강화
- ❖ 담당 검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IT 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과 가치창출에 역점을 둘 것이라 공약하였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소위 ‘빅데이터 3법’으로 칭하며, 법제 개편을 추진하여 왔다.
- 현행 법제상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내지 ‘가명화’ 하고, 이를 어떠한 목적으로든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법제 개편 과정에서 가명정보(개인정보를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의 활용 범위 등 관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가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전제한다. 이를 위해 각 관련 법안에 ‘가명화’ 내지 ‘가명조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이다.
- 반면 시민사회는 수개의 가명정보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가명정보라 하더라도 가명조치에 사용된 알고리즘 등을 해독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명정보의 상업적 목적 사용(또는 문구를 추상적으로 정하여 상업적 활용을 일부 용인하는 일체의 개정논의)을 반대하고 있다. 2015년 하버드대 연구팀이

한국인 사망자 23,163명의 처방전 데이터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해제하는 데 성공한 것은 그 일례이다.

- 현재 법제 개편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하는 반면, 정보주체 권한 강화 및 가명정보 활용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화 하여 활용하는 명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한편 EU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 5. 25. 발효되었고, EU에 현지 영업소를 두거나 EU 주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은 적용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 한국기업도 GDPR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국회는 GDPR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GDPR 내용을 ‘산업 육성’이라는 의도에 맞게 왜곡한 것이다. 일례로 GDPR은 가명화(pseudonymisation)에 대해서 i) 개인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ii) 개인정보가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그 추가적인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고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가명정보를 여전히 개인정보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재식별조치를 방지하는 적절한 안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명처리 설계 단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용 목적도 제한하고 있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 입법 적극저지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621)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622)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636)
---------------	--

소관상임위	(1) 행정안전위원회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정무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 (소속정당)	(1) 2018. 11. 15.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2) 2018. 11. 15.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3) 2018. 11. 15.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구분하여,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과학적 연구’ 개념을 “기초·응용·민간투자연구 등”으로 정함 -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도록 허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요금정산, 타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례조항 신설 -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이용자의 연락처 부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2016621)의 의결을 전제로 정보통신망법 제1조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 기능 삭제 - 각종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통지의무 관련 내용 삭제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명정보 개념을 입법하여, 금융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 신용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근거 마련

나. 검토의견 - 적극 입법 저지

- 개정안 (1), (2)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허용하고, 정보통신망법 내용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위 개정안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으로 정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과 연구에 가명정보 활용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과학적 연구 범위를 기초·응용·‘민간투자’ 연구로 명시한 것은 재차 상업적 목적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명정보가 결합과 알고리즘 해독 등 과정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후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제공된 가명정보가 무기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명정보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도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가명처리 절차, 관할기관, 재식별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논의 없이 법제 개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 한편,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판단할 별도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배치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특례를 두어 활용 가능성을 높인 것과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시 이용자의 연락처 부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내용 또한 모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강화하는 내용이 아닌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활용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년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시류를 역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개정안 (3) 관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위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한 맥락에서 가명정보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한 정보 활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위 개정안도 금융 관련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연구·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골자이다. 특히 신용·금융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로서, 만약 활용된 가명정보가 결합 등을 통해 재식별될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칠 유무형의 손해는 산정이 어렵다. 위 개정안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이라는 명목 하에 상업적·공익적 목적에 제한없이 가명정보를 무한정·무기한 활용할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주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 이처럼 ‘빅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근본 목적의 실현보다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GDPR 등이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등은 입법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고민을 결여한 ‘빅데이터 3법’의 입법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빅데이터 3법’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통신비밀보호법의 위헌적 요소 제거 및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 강화고자 함.
- ❖ 담당 검토: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는 2010. 12. 28.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횟수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그 개정시한을 2011. 12. 31.으로 제시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가30 결정). 그러나 2011. 12. 31.까지의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결과 실무에서는 통신제한조치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새롭게 통신제한조치를 허가 받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음.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실시간 위치추적(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등 결정) 및 기지국 수사의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며(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결정), 그 개정시한을 2020. 3. 31.까지로 제시하였음.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의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였음(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등 결정), 그 개정시한을 2020. 3. 31.까지로 제시하였음. 이처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다양한 부분에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진보네트워킹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과 함께 2019. 2. 1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TF를 구성하였음. 위 TF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

점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을 작성하였음.

- 위 TF는 2019. 9. 18. 박주민 의원실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입법토론회를 개최하여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사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공개하였음.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2019416)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 의 (소속정당)	(1) 2019. 3. 28. / 정부
주요내용	<p>가. 통신제한조치 기간 연장 시 총 연장기간 신설(안 제6조제8항 신설)</p> <p>1)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 연장기간이나 총 연장횟수 등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헌법상 개인의 통신의 비밀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p> <p>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통신제한조치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 범위를 명확히 함.</p> <p>나.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안 제13조제2항 신설)</p> <p>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나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등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p> <p>2)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p>

	<p>요건(보충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치정보 추적자료에 대한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과거의 위치정보 추적자료와 내란죄·외환죄 등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제한을 최소화하도록 함.</p> <p>다.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 추가(안 제13조제3항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전기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한 기지국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때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 및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과 관련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명확히 함. <p>라. 기소중지결정·참고인중지결정 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에 관한 통지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1항, 안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기소중지결정이 있거나 수사·내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의 위치정보가 범죄수사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기소중지결정이나 참고인중지결정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년(국가안보 관련 범죄 등의 수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함.
--	---

	<p>3) 다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국가안전보장,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관련 통지를 하도록 함.</p> <p>마.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마련(안 제13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p> <p>1)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이 정보주체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는 통지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은 정보주체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함.</p> <p>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절차적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장을 강화함</p>
--	---

나. 검토의견 - 입법 반대

- 정부가 2019. 3. 28.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및 이에 대한 통지,’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각 요건 등을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임. 그러나 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각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형식적·최소한으로만 받아들임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근본적 취지를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법률안임. 개정안이 규정하는 요건 등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및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임.
-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 7. 22. 의견표명을 통해 위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예방·통제하는데 불충분한 입법임을 지적하였고,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위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권고를 하였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대한 권고를 통해 ①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이 더욱 축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②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③ 위치정보 추적자료제공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④ 기지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음.

- 나아가 위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은 일체 반영하지 않고 있음.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의 권리 등 정보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수사기법이기에 때문에, 시민사회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입법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개정시안이 4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에 관한 입법이 개정시안에 임박하여 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우려 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위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의 예방·통제에 기여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법률안임.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 ❖ 정책 목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시간적·양태적 제한을 강화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 저지
- ❖ 담당 검토: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1. 현황 및 문제점

- 야간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옥외집회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2008헌가25), 시위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2010헌가2) 결정이 있었음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채, 몇 년 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왔음.
- 그런데 2016년 발의된 개정안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문구를 ‘오전 0시에서 오전 6시’로 수정하여 이 기간 동안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한편 최근 한 시민단체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 국회의사당 돔에 메시지를 투사한 일이 있었음. 이에 대해 레이저, 영사기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 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그러나 이는 집회·시위의 양태를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해 형사제재를 하는 것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정안임.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86)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98)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	(1) 2016. 6. 3. / 윤재옥(새누리당) (2) 2019. 3. 19. / 김도읍(자유한국당)
주요내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0086) 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수정하고, 금지된 시간에도 관할 경찰서장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298) 사전 신고 없이 레이저, 영사기 등의 기계·기구를 이용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경찰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검토의견

(1) 시간적 금지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관한 검토

- 헌법재판소는 2008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경찰이 예외적으로 허가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해가 진후부터 오전 0시까지의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 보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음.
- 그런데 개정안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이는 야간 옥외집회의 금지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헌법재

판소 2008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시위의 경우에도 오전 6시 이전에 해가 뜨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법보다도 오히려 시간적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정 시간대를 정해 일률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기본권의 침해로써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다시 특정 시간대를 정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의 개정은 적극 저지되어야 함.

(2) 양태 규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관한 검토

-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집회의 장소, 시간, 양태를 선택할 자유 역시 보장됨. 따라서 집회 장소, 양태,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그런데 개정안은 레이저, 영사기 등을 이용해 메시지를 투사하는 것을 사전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레이저 등을 이용한 메시지 투사는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한 메시지 전달과 방법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후자의 경우는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에만 사전신고의 의무를 두는 것은 집회 양태에 대한 과도한 제한임. 또한 개정안은 ‘레이저 등을 이용해 공공의 안녕질서 위반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데 위와 같은 문구가 규정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모호하여 자의적인 형사제재를 불러올 수 있음.
- 따라서 위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극 저지되어야 함.

입법 적극추진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재정신청 제도확대)

- ❖ 정책 목표: 재정신청제도 전면확대
- ❖ 담당 검토: 민변 사법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재정신청 대상을 고발사건인 경우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의 경우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됨에도 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그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 특히 피해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인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 권력형 비리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의 경우 사건이 중요한 만큼 정치권력의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높고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 우려가 높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또한, 검찰항고를 거쳤기 때문에 심급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취지로 현행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나, 검찰의 내부 심사와 법원의 외부 통제는 다르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이유는 없고, 위와 같이 재정신청이 확대되면 업무처리의 효율성, 신속성과 신청자의 접근성을 위해 관할법원이 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 한편,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신청에 의해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거나 구형을 하지 않거나 무죄를 구형하는 등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재정신청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 장치로서 실질적으로 기

능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를 개정하여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의 제정결정의 정본이 검사의 공소장을 대신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69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0)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2016. 10. 19. / 권은희(국민의당) 2017. 1. 18.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2017. 1. 18. /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698)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안 제260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4) -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지 않아도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60조제2항). -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법원이 재정신청의 기각 또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정담당변호사에게 보완 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2조제7항). - 재정신청 기간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 260조제3항) -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검사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담당변호사가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265조의2)

	<p>(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05140) -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함</p>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 촉구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위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권은희 의원안 및 박영선 의원안) 및 공소유지를 재정담당 변호사 제도 도입(박영선 의원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 법률안은 현행 제도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입법이 촉구된다. 아울러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위 박영선 의원안) 또한 충실한 사실심의 심리를 통해 재정신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정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성별 임금격차 해소의 기반 마련
- ❖ 담당 검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노동과 빈곤팀)

1. 현황과 문제점

- 2017년 기준으로 한국 남녀 근로자의 고용률 격차는 20.4%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⁵⁾, 성별임금격차 역시 OECD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 평균 비율은 13.5%인 것에 반해, 한국은 34.6%인 것으로 드러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⁶⁾ 여성가족부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 현황’ 자료에서도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이 66.6%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⁷⁾
- 국회는 이와 같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2018. 12. 7. 공공기관의 성별 임직원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⁸⁾을 통과시켰으나, 위 개정안은 성별 임금 현황 공시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성별 임금 현황 공시 대상 내지 성별 임금 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하는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여 차별 시정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는 제도를 갖추기 위한 보완 및 추가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5) OECD.Stat,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

6) OECD.Stat, Employment: Gender wage gap

7)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4

8) 제11조(경영공시)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생략)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최대의 성별 고용률 격차와 성별임금격차 수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위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또한 고용상 남녀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758)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1) 2018. 11. 23.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안 제17조의10 신설).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⁹⁾은, 대통령

9)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단체의 장

령으로 정하는 사업주¹⁰⁾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또한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채용과 승진에 있어서의 과거의 차별을 해소하기 방편으로 현재의 ‘차별’만이 아니라 ‘차이’를 줄이고자 개별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¹⁾

- 본 개정안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¹²⁾에 비해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보고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발견을 용이하게 하여 남녀 고용차별 및 임금차별을 시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진다.
- 또한 현행 헌법상 국가는 최저임금 보장 의무 외에도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¹³⁾, 이러한 헌법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서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0) 시행령 제4조② 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11)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공정임금 및 임금분포 공시제 연구』, 2017. 12., 12쪽

12) 시행령 제4조② 법 제1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5. 28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13) 제32조

남녀 고용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공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별 고용률 격차 및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현실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 실현 및 차별시정 촉진 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 정책 목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 ❖ 담당 검토: 민법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팀)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의 성(姓)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현행법의 부성주의 원칙은 자녀의 성 결정에 남녀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한편 비록 현행법이 예외적으로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기는 하나, 그 시기가 “혼인신고 시”로 한정되어 있다. 출산 계획이 없거나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자녀의 성과 본을 혼인신고 시 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불합리하며, 부의 성과 본을 기본으로 따르는 원칙과 모의 성과 본을 따를 경우 따로 협의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것은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한다.
- 이와 같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반하며, 헌법에도 위반되는 부성주의 원칙은 폐지되어야 하며, 이미 수년간 개혁입법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1.	법안명 (의안번호)	민법일부개정법률안(201755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소속정당)	2018. 12. 14. /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원칙과 예외규정을 삭제 (안 제781조)
2	법안명 (의안번호)	민법일부개정법률안(2022741)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소속정당)	2019. 9. 27.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자녀가 인지된 경우,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의 경우에 자녀가 종전의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부모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81조 제4항 및 제5항)
3	법안명 (의안번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3437)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소속정당)	2019. 10. 31.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가.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 781조제1항). 나.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하도록 지정받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자녀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것으로 함(안 제 781조제2항). 다. 부 또는 모가 사망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방이 단독으로 자

		<p>녀의 성과 본을 정하도록 함(안 제781조제3항). 라. '변경필요' 요건을 삭제하여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81조제6항). 마. '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알기 쉽고 성평등한 용어로 변경함(안 제781조).</p>
--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신경민 의원안 및 정춘숙 의원안은 모두 현행 민법 제781조 제1항의 부성주의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의 성은 부모의 협의로 결정하되 그 협의 시기에 대하여도 현행과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태어난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이는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위 두 법안 모두 현행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대하여는 실제적인 개정이 없어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보호가 없다.
- 김상희 의원안은 위 두 법률안과는 반대로 현행민법 제781조 제1항은 기존대로 유지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혼인 외 출생자, 성과 본을 정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파양된 친양자에 대하여 각 기존의 성과 본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성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안은 혼인 외 출생자 또는 파양된 친양자의 성과 본에 대한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부성주의를 폐지하는 안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민법 제781조 제4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지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자녀의 법적 생활의 안정보다 부계혈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 즉 혼인 중 출생자를 전제로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은 물론,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성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동조 제4항 역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부성주의 원칙 폐지에 입각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촉구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 ❖ 담당 검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족법팀)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법은 건강한 가정생활과 가족의 유지·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일부로서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 현행법의 범명과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 규정은 ‘건강가정’에 대응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본 법률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전형적 형태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 사이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고 다른 유형의 가족형태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게 되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다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 10. 10.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권고’ 결정을 통하여 중립적인 법률명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그런데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이 중요해지고, 가족 형태별 지원의 필요성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현행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족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이행·점검·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172999)
소관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2018. 12. 7.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1) 이 법의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p> <p>(2)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事實婚)·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안 제3조).</p> <p>(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p> <p>(4)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p> <p>(5)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가족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3조 및 제14조).</p> <p>(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가족교육·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p> <p>(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p> <p>(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한 사회적 편견과 차</p>

	<p>별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전·후 가족, 위기가족 및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적합한 지원 시책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p> <p>(9)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문제의 예방·상담 등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각각 한국가족원과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안 제29조 및 제30조).</p> <p>(10) 건강가정사를 가족전문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전문사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자격의 요건을 확인 후 가족전문사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전문사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p>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건강가정’이라고 함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이므로 이 용어를 모두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법안은 의미가 있으며, 현행법의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기본이념을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가족 형태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제도적 시책을 강구하는 것,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등은 매우 긍정적이며, 기타 기존에 존재하여 온 가족정책 전담기관들을 법률로서 정비하는 등 단순히 지원을 하는 법률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
- 다만, 이 법률은 가족 정책에 대한 기본법이기에 때문에 그 개념상 혼인·사실혼·혈연·입양 이외의 사유로 구성되는 동반자 관계에 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나 정책들이 추후 다른 법률을 통하여 입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태아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로 인정
- ❖ 담당 검토: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노동과 빈곤팀)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그 결과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 수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실제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한 것을 이유로 산업재해신청을 하였고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 헌법은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제32조 제4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2항). 또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만 산재 인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19433)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 의 (소속정당)	2019. 3. 28. /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사망 또는 선천성 질환이 있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봄(안 제91조의12 신설).</p> <p>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91조의13 신설).</p> <p>다. 선천성 질환으로 요양하는 기간 중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간병을 위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등을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14 신설).</p> <p>라. 선천성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 15세에 장애 판정을 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장애보상연금 수급자일 경우 18세까지는 일정 비율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의15 신설).</p> <p>마. 선천성 질환으로 장애가 있어서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이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함(안 제91조의16 신설).</p> <p>바. 보험급여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지급하고, 특례 조항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다른 보험급여 관련 규정을 준용함(안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 신설).</p> <p>사.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91조의19 신설).</p> <p>아.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함(안 제127조).</p>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여성노동자의 임신 중 업무에 기인해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여 선천성 장애아가 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 사유로 노동자에게 발

생한 재해’라고만 규정하던 독일제국보험법 제539조 제1항 해석 적용에서 장애아를 산재보험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독일기본법 제20조 제1항 사회국가원리 구현에서 ‘본성상 단일체인 임신한 여성노동자와 태아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독일기본법 제3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하였다. 이후 1996. 8. 7. 제정된 독일사회법전 제7권은 ‘임신 중 모의 보험사고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그러한 한도 내에서 태아는 피보험자와 동일하다.¹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모에게 업무상 질병을 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유해요소로 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모에게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고로 본다’고 확인적으로 규정하였다.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 12. 24.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제주의료원 사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태아와 모체가 동일체인 이상 산업재해로 태아에게 발생된 선천적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하였다¹⁵⁾.

-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모체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며 모체와 함께 생존하게 되는데, 탄생으로 인해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는 특성이 있다. 모체로부터 생명을 얻는 속성으로 인해 모체의 노동환경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여성 노동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태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

14) 국가인권위원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2018. 12. 24.) 에서 재인용. BVerfGE 45. 376. Beschluss des Ersten Senates vom 22. Juni. 1977 - BvL 2/74 - Unfallversicherung

15) 국가인권위원회,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6두41071)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2018. 12. 24.)

모자보건법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여성의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하고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재생산권을 보장함
- ❖ 담당 검토: 민변 여성위원회 재생산권팀

1.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후반부터 낙태죄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사익으로 서로 충돌하는 관계로 보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하였음. 그러나 점차 낙태죄 폐지 여론이 높아지면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헌법재판소는 두 번째 헌법소원에서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서로 단순히 충돌하는 관계로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임신·출산·육아가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여성의 임신중단 결정이 전인적(全人的) 결정임을 인정함.
-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모자보건법이 제정된 1973년,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까지 국가는 가족계획, 인구정책이라는 명분으로 낙태죄의 사문화를 적극적으로 방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자기결정권 등은 고려되지 않았음.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 있게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인 재생산권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는 ‘안전한 임신중단을 할 권리’로 이어짐. 재생산권의 측면에서 국가는 여성의 임신중단권 뿐만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함.

-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지금,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권리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이를 위해서 정부와 수단에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안전한 임신중절을 할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 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함.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802) (2)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29)
소관상임위	(1)보건복지위원회 (2)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1) 2019. 4. 15. 이정미 (정의당) (2) 2019. 4. 15. 이정미 (정의당)
주요내용	<p>(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802) 형법상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의 보장과 제한 및 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함.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부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 및 수술이 가능하도록 함. 임신 14주부터 22주까지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종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사유는 삭제하고 태아가 건강상태에 중대한 손상을 입고 있거나 입을 염려가 뚜렷한 경우로 대체하고,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자 함. 임신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98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p> <p>(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829)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p>

	<p>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p>
--	---

나. 검토의견 - 보완 후 입법 촉구 의견

○ 개정안은 기존 형법의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여 여성의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동의낙태죄를 폐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중절을 비범죄화한 점, 모자보건법에서 초기 임신(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1) 기간의 문제

○ 기존법과 개정법은 모두 임신 주수의 기산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데 임신의 기점을 언제로 두느냐에 따라(예를 들어 월경 시작일 또는 수정일) 실제 임신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와 같은 기간 제한 방식은 보통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은 모든 환경에서 임신 주수에 따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의료장비의 수준 등 환경적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임. 즉 기간 제한 방식은 실제 임신 기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태아의 생존 능력이라는 제한 근거가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2) 사유의 문제

○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나 14주부터 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상태, 성범죄, 친인척간의 임신,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한정하고 있고, 22주를 초과한 때부터는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친인척간의 임신은 현행법상 태아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불가능¹⁶⁾하고 성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 이러한 사유들은 입증 과정에서 임신중단의 시기가 늦춰짐으로써 안전한

1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인공임신중절을 보장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사회적·경제적 사유는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사유를 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때에만 임신중절을 허용하여 결국 충분한 경제적 지원이 있을 때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결정은 존중받을 수 없게 되고, 게다가 보편타당한 사회적·경제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음.

- 개정안은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나 기간 제한과 사유 제한 방식으로 일정 주수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을 한 의사 등을 과태료 등의 방법으로 제한하여 여성의 임신중단에의 접근성, ‘전 기간에 걸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네덜란드,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의 사례에서 기간의 제한이 없어도 충분한 정보와 정책적 지원이 있으면 인공임신중절률은 오히려 떨어지며 대부분 초기 단계에서 인공임신중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짐. 우리나라의 법개정 논의도 임신중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허용할 것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정보,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재생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

- ❖ 정책 목표: 국회가 체결·비준 동의권을 갖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포된 남북합의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존속 및 이행에 대한 신뢰 및 규범력을 높여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강화
- ❖ 담당 검토: 민변 통일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남북 당국간 체결된 합의서가 2백 개를 상회하는데, 이 중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는 현재까지 13개 불과 하는 한편, 대통령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사유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2018년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간 선언 2건과 1건의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되었음. 2018년 체결된 남북합의서 중 4.27 판문점 선언은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야당이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의결되지 못하였고, 9.19 평양선언은 정부가 국회에 동의안을 송부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비준하였으며, 남북군사합의서도 일각에서는 국회 동의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바,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합의서의 국회 비준 여부와 효력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남북합의의 존속과 이행의 지속성에 관한 남북당국 및 남북주민 모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 한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중단처럼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권 변동, 국내외 정세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시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해 다수의 관련자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향후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현상은 향후 전면적인 남북간 경제

교류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정경분리원칙을 법률에 선언하여 정부로 하여금 정치논리로 경제교류협력을 중단시키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규범화할 필요가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889)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843)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087)</p>
<p>소관상임위</p>	<p>외교통일위원회</p>
<p>제안일자 /대표발의(소속정당)</p>	<p>(1) 2019. 4. 18. 이인영(더불어민주당) (2) 2018. 8. 13. 송갑석(더불어민주당) (3) 2017. 9. 5. 이인영(더불어민주당))</p>
<p>주요내용</p>	<p>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889) 공포된 남북합의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p> <p>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4843)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경분리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고한 남북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p> <p>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9087)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p>

나. 검토의견

- 현재 23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 그런데 이 가운데 이인영 의원 안(2009087)은 ① 국회가 체결·비준 동의를 갖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포함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히고, 그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존속 및 이행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②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없이 체결된 남북합의서라도 그 효력의 정지 사유를 현행법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필요’에서 ‘국가안전보장 등의 현저한 침해 우려’로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비록 중요도가 낮아 국회의 체결·비준 대상이 아닌 남북합의서 조차 공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 우려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남북합의서의 존속 및 이행에 대한 남북한 당국과 주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되며, 이에 더하여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안(2018904)은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효력에 관해 명확히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정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합의가 계속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됨. 한편, 송갑석 의원 안(2014843)은 국내외 정치의 영향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등 남북경협이의 안정성이 약화되었던 과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남북경협 시책의 목적으로 정경분리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중단 위험성에서 오는 남북경협 사업의 비용을 낮추고, 규모 있는 경협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 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 환경오염피해지들에 대한 구제의 신속성 및 실질화
- ❖ 담당 검토: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피해가 가지는 원인의 불명확성, 누적성, 장기성, 광범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환경오염유발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 12. 31. 제정되고 201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제정 당시에는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인과관계의 추정, 구제급여 제도 등 획기적인 제도들의 도입으로 환경오염피해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
- 그러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된지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동법에 의한 환경오염피해구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구제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의 범위를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한정하여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가 아닌 경우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구제 대상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인과관계의 추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의해 생성된 가해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론으로서 개연성 이론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 등 신체 건강상의 피해에 대해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에 따라 입증책임을 구분하는 대법원의 판례법리에 대하여는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비판과,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를 규정한 동법 제9조 3항의 배제요건이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었음.
- 실제 김포 거물대리 주민들이 집단화된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

어 각종 질병이 발병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가해자가 다수인 반면 어떤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질병이 발병하였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오염피해구제신청이 기각되기도 하였음.

- 이에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인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피해 대상의 확대, 기존 대법원의 특이성 비특이성 질환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의 변화 유도, 복수의 가해자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의 확대 적용 등이 요구되어 왔음.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 확대, 인과관계 추정 배제 요건 강화 등 / 2009819)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제품피해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 징벌적 배상제 / 2023102)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	(1) 2009819 - 2017. 9. 29. / 서형수(더불어민주당) (2) 2023102 - 2019. 10. 28.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피해 발생원인 확대, 인과관계 추정 배제 요건 강화 등 / 2009819) -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시설의 설치·운영 등 개발행위로 확대하고 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개발행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 둘 이상의 사업자가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추정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할 수 있는 요건에

	<p>환경오염피해 구제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정보 제공, 관련 시설·장비 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 환경단체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운영기관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신설). -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소송 진행을 이유로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함(안 제34조제3항 삭제). - 환경부장관이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 확립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p>(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제품피해에 대한 적용대상 확대, 징벌적 배상제 / 20231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화학제품피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4호·제5호, 제3조제2항). - 화학제품의 사용 및 노출 등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신설). - 환경오염피해와 화학제품피해가 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화학제품이 화학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화학제품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9조제4항). -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15조). - 피해구제정책위원회에서 화학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화학제품피해 구제 대상을 규정하고, 구제급여를 특별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23조). - 피해구제계정의 재원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	---

	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제60조에 따른 과태료를 추가함(안 제35조제2항).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진

- 개정안 (1) 관련 : 동 개정안은 그 동안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구제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피해를 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피해에 한정된 결과 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시설 설치와 무관한 개발행위에 의한 환경오염피해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복수의 사업자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특정 사업자가 인과관계 추정 배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당 환경오염피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전환하였고, 구제 급여 선지급 요건을 확장하고, 환경단체가 피해자 등을 대리해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서,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임.
- 개정안 (2) 관련 : 동 개정안은 개정안 (1)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대상에 화학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확대하였는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동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국한되었기에, 일반 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 구제를 통한 지원 및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책임 완화 등을 위한 일반법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고 할 것임, 또한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피해의 경우 가해자가 고의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등의 사전적 조치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입증 완화, 건강피해 범위 확대, 신속한 구제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구체화
- ❖ 담당 검토: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433명의 사망자 및 국민의 상당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내재적인 건강상 피해 등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이는 관련 법률의 미비 및 행정의 안이한 대처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오로지 영업이익 확대를 위한 광고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탐욕이 결부되었던 것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 인원 6,521명 중 절반 이상이 피해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가습기살균제와 발병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구제급여로,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구제계정 대상자로 구분하는 등 정부의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에 따라 지원 기준을 일응 달리하고 있음.
-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인 법률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범위 확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이원화된 피해자 지원체계의 단일화,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집단소송제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이 요구되어 왔음.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619, 2022677, 2022915)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	(1) 2022619 - 2019. 9. 24. / 신창현(더불어민주당) (2) 2022677 - 2019. 9. 25. / 조배숙(민주평화당) (3) 2022915 - 2019. 10. 18.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6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피해 범위와 피해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모든 생명·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차별문제를 해소함(안 제2조) - 인과관계 추정 강화 및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조) - 구제급여에 대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과 정부예산을 합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함.(안 제10조, 제32조) <p>(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6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폐섬유화, 천식, 폐렴,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폐기종 및 역학조사 등 관련 연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전신성 질환을 포함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 규정함(안 제2조). - 가습기살균제 노출의심자를 1994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를 구입한 사람과 구입자의 직계비속, 같은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장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으로 규정함(안 제2조). - 인과관계의 추정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습기 사용기간, 가습기살균제 독성, 의학적 소견, 가족력 등 그 밖에 피해발상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하고, 피해 증상이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안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함(안 제7조). - ‘피해등급’을 ‘피해증상의 중증도에 따른 급여기준’으로 개정함(안 제 10조). - 피해구제위원회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의 재심사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9의2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31조). 화학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화학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p>(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9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안 제5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었던 폐질환 및 폐외질환 조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폐지하고 피해지원위원회로 통합하여 피해지원금의 지급여부와 지원기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8조). -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0조의3 신설). -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구상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지원하던 정부출연금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고, 구상조건을 삭제함(안 제 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제31조부터 제33조, 제36조의2·제 33조의3 신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소송에 필요한 자료가 오로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제출명령을 받은 자료를 멸실, 훼손, 은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안 제36조의6 신설).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추진

- 위 개정안들은 기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건강피해범 위 협소와 구상금에 따른 지원체계 이원화, 인과관계 완화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사법적 구제의 한계 등에 대한 사항들을 법률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정안(3)의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물론,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않았던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환경오염피해 및 화학제품 피해의 경우 그 특수성상 가해자에게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정보편중성의 해소 방안이 피해자 구제의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정보접근 및 확보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개시제도의 법제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다만 동 개정안은 증거개시제도에 따른 법원의 개시명령을 가해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적 제재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 정책목표: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를 통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도모함
- ❖ 담당 검토: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기존 제주4·3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만 두고 보상금 지급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았는데, 개정법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제주4·3 군법회의를 일괄적으로 무효화하는 규정,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규정 등을 포함하였음.
- 과거사 기본법이 최근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통과된 반면 제주4·3개정법안은 2년 간 소관상임위원회 계류중인 상황이어서, 조속한 입법만이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의 진정한 명예회복과 더불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길이라 할 것임.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1) 2010912 (2) 2012565 (3) 2014977 (4) 2019332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1) 2017. 12. 18.

	<p>(2) 2018. 3. 20.</p> <p>(3) 2018. 8. 21.</p> <p>(4) 2019. 3. 21.</p>
대표발의	<p>(1) 오영훈 의원</p> <p>(2) 권은희 의원</p> <p>(3) 박광온 의원</p> <p>(4) 위성곤 의원</p>
주요내용	<p>진상조사를 주목적으로 하던 기존 법안을 보상을 포함한 ‘피해회복법’으로 발전시킴</p> <p>제주4·3위원회에게 피해신고 접수, 직권조사를 포함한 진상조사, 피해구제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함</p> <p>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절차참여권 및 발언권을 도입하여 제주도민의 자율권 존중과 피해자의 권리를 도입함</p> <p>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종합결론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주4·3사건의 정의 조항에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임을 명시하여 정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함</p> <p>4·3사건 당시 실제 없는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명문화함</p> <p>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보상의 수준에 대하여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p> <p>기타 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의 도입, 4·3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와 같은 피해회복 조치를 구체화함</p> <p>종래의 법규정을 개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불일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p> <p>4·3사건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p>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조정위위원회 회부를 거쳐 2019. 10. 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반면,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올해 4월에서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차 심의를 거친 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임.
- 최근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2019. 1. 17.)

이 있었고, 이에 대한 형사보상 지급결정(2019. 8. 21.)도 있었음. 제주4·3 군법회의와 같이 조직적인 국가범죄, 그리고 광범위한 희생자가 존재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심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절차만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함. 따라서 개정법안의 제주4·3 군법회의를 일괄 무효화하는 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

-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있는 바, 위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 3년 적용을 법 시행 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확대하여 채무자 간 형평성 도모 및 청년들의 채무조정 여건 개선
- ❖ 담당 검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경제전반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는 가계부실을 초래하고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막아 가정파탄 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2017.11.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통과되었지만, 2017.12.12. 법 개정과 2018.6.13. 법 시행일 사이에 경과 규정이 촘촘하게 마련되지 못하여 비슷한 시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간 최대 24개월의 변제기간 차이가 발생함. 2018.1.8.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제정해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 및 인가 후 사건 전부에 대해 변제기간 3년 단축을 허용한 바 있으나, 2019.3.19. 대법원이 법 개정 시행 전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 상한 단축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음. 그 뒤 2019.3.26. 서울회생법원은 지침을 폐지했고 그간 변제기간 단축 신청을 하거나 신청 후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기각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생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 개선이 필요함.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 현재 위와 같은 입법취지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

법안명 (의안번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 2020845)
소관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일자 /대표발의 (소속정당)	2019. 6. 5.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11조제5항의 개정 조항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사건중 면책되었거나 폐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도 그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변경(단축)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본문). - 단,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에서는 위 단축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단서).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요지(2019. 3. 19. 2018마6364 결정) :
-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여 서울회생법원이 60개월의 변제계획안을 47개월로 단축하는 신청을 인가한 것에 관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단축하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이에 비추어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도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바,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

였으므로 변제계획 변경안의 인가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함.

-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
-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개정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회생법원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매우 우려됨
- 2004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제정될 당시에도 부칙에서는 기존 사건은 구법인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고 하였고, 구법인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5항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법시행 후 전국의 모든 파산부는 변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신청을 인용해 준비 있음. 이는 구법상으로도 변제기간의 최대한이 8년이었던 것이지 5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법 시행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어 신건은 모두 5년이 되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기존 사건도 모두 5년으로 단축하는 신청을 인정해 주었던 것임.
- 오랜 기간이 지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어 최대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개정 전 법률에 의할 때도 최대한의 기간이 5년인 것이지, 3년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미 인가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재량의 일탈은 아님.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서 최대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서민을 보호하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한번 실패한 자들을 최대한 빨리 구제하여 사회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신청과 인가의 시기로 인하여 채무자 사이의 형평이 맞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6개월을 기준으로 단축할 수 있어야 함.
- 즉 법률의 개정 이후에는 36개월 이상 변제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의 단축안이 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변제계획안이 되는 것임. 그렇지 않다면 개정법률의 시행이전에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들 중 일부는 진행 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였을 것인데, 이는 채무자에게 다시 한 번 고통을 주는 일이고,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며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임.

○ 개선방향

- 따라서 개정안처럼 제611조제5항의 개정 조항 시행 이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신청사건 중 면책되었거나 폐지되어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도 그 변제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변경(단축)된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되, 종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36개월 이상 변제한 개인회생사건에 서는 위 단축된 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회생법원 등 각급 법원이 채무자회의 회생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민주화 3법)

- ❖ 정책목표: 대학평의원회 강화, 대학운영의 민주화
- ❖ 담당 검토: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대학의 운영에 있어서 자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관철시키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특히 2018년부터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국공립대의 경우 2019년 3월까지 전국 21개 학교가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18개 학교는 대학평의원회 규정조차 미제정한 것이 드러났었음. 다만 2019년 2월 교육부가 2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이행시 예산 삭감을 통보하자 각 대학이 규정 및 설치에 나서서, 2019년 5월 교육부 발표기준으로는 모든 국공립대에 대학평의원회 학칙과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됨.
- 무엇보다도 현재는 법상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이 많지 않아서 명실상부한 운영이 어려운 점이 존재함.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다양하게 발생해왔던 부패비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학평의원회 등에 부여해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과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입법이 요청됨
- 한편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갖는 총장선출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주적 운영절차가 부족한 상태임. 교육부가 2018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개 사립대학 중 74%(97개 대학)는 임명제, 21.4%는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었고,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대학은 4.6%(6개 대학)에 불과함. 또 국공립대의 경우에 2012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립대 2단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총장 선출에서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재정 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 직선제 학교가 감소했었음. 또 박근혜 정부당시 직선으로 선출된 총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어왔음.

- 교육부의 ‘대학의 가치정립과 사립대학 총장 선출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대 교수들은 교수 직선제(38.8%)와 구성원 직선제(35.6%)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74.4%가 어떠한 형태로든 직선제를 선호 한다는 의미임. 해당 설문조사는 2018년 6월 사립대 교수 87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자료임.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이화여대·성신여대·상지대 등에서 학생의 참여까지 보장된 민주적 총장선출제의 실험이 재개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학내의 민주적 총장선출제도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함. 또 총장직선제 또는 간선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중심의 선거제도가 강하고 학생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음. 이 때문에 대학의 제 주체들의 참여권이 조금더 보장된 형태의 제도개선이 요청됨.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4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41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22414)
소관상임위	교육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	2019. 9. 10. / 여영국(정의당)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 위원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중 1인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함 - 대학현장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 심의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26조의2제1항). -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로 구성하도록 함 <p>〈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p> <p>가. 대학현장 제·개정,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 심의 사항으로 변경(안 제19조의2제1항).</p> <p>나.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학교법인의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p> <p>다. 대학평의원회는 25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6분의 1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전체 평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학생으로 함(안 제19조의2제2항).</p> <p>라. 학생인 평의원도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호선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p> <p>마.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5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 전부를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6항).</p> <p>〈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p> <p>대학의 장을 임용추천함에 있어 그 후보자를 대학평의원회가 선정하거나, 대학의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의 협의체가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안 제24조 등).</p>
--	--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 우선 대학평의회가 실질적인 대학 내의 참여 민주주의 기본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성인원수를 늘리며, 특히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보장하고, 일부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함. 아울러 학교법인 개방이사, 학교법인 감사,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학교장의 후보자,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됨. 다만 현재 11인으로 규정된 대학평의회 숫자를 25인 이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의 신축성을 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재 설치된 대학평의회에서 대학원생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대학평의회에서 학생의 비율을 상향하자는 제안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총장 선출에 관해서 일방적인 임명제는 철폐하되, 구체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직선제, 간선제 여부, 구성원 참여 비율에 관해서는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차채택에 있어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요구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함.

- 한편 별도 국립대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경우 평의원의 구성원을 교직원으로만 한정하고 있고, 조교 및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규정 조차 없어서 법체계상 맞지 않을뿐더러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함. 현재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로 관련 개정 법률안이 각 발의되어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의 결의가 필요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 목표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부모의 국적, 인종,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체류자격 등과 무관하게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의 마련
- ❖ 담당 검토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 현황과 문제점

- 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시작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것을 아동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으며(협약 제7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해왔다.
- 한국의 현행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처리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그 목적을 ‘국민’의 출생 등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아닌 외국인 아동의 출생에 대한 등록과 증명을 배제하고 있다.
-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관에서 출생을 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없는 국가가 30여 개 이상 존재하며,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에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하여 출신국의 정부 기관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에의 방문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은 어디에도 출생을 신고할 수 없으므로 공적으로 기록이 되지 못하며,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해당 법안에 관한 검토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p>법안명 (의안번호)</p>	<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5749)/ 2018. 9. 27.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p>
<p>소관상임 위</p>	<p>법제사법위원회</p>
<p>제안일자 /대표발의 (소속정당)</p>	<p>2018. 9. 27.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p>
<p>주요내용</p>	<p>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7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고 추후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하고 있으며,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출생신고수리증명서는 신고수리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이 경우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출생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자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3 신설)

나. 검토의견 - 입법 적극촉구 및 일부 보완 의견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될 권리의 보장은 법적으로 공백인 상태로, 실무상 그 필요에 의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신고서류가 ‘특종 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어 보관될 뿐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이 때, 신고 절차 및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현행 증명서의 내용이 신고의 ‘수리’ 증명에 그치므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상 한국에서 가족관계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이주아동의 출생 사실을 등록,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출생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 그리고 출생신고 과정에서 미등록 체류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미등록 이주인이 통보에 대한 우려 없이 출생을 신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의 통보 의무에 대한 금지조항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다.

- 한편, 법안에 의하면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 작성 시 외국인등록을 한 부모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동이 부모의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실무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제한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거나 기재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과도한 노동시간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
- ❖ 담당 검토: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은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기로 악명 높고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아동·청소년 역시 이러한 환경에 보호 없이 노출되어 있음. 특히 최근에는 아동이 전면에 등장하는 육아 예능 프로그램 및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성행하면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과도한 촬영시간을 꼽을 수 있음. 청소년정책분석센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연예인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촬영을, 10.3%가 하루 14시간 이상 촬영을 경험한 적이 있음. 이러한 장시간 촬영은 학습권의 침해로도 이어져 같은 응답에서 응답자의 47.6%가 한 학기에 일주일에 만나질 이상을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34.1%는 숙제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응답함.
- 정신적 또는 정서적 인권 침해 사례 역시 심각하여 일부 영화의 경우 아동 연기자들이 폭력적 또는 선정적인 장면을 재연한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일도 발생하고 있음. 2013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의 업무협약으로 인하여 아동 연기자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 밖에도 촬영장에서의 폭언, 선정적 촬영의 강요, 외모에 대한 비하 및 다이어트·성형수술 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가 있음.

- 또한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로서 대중문화예술에 따른 수입을 대부분 친권자가 관리함으로써 실제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한 아동·청소년이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금지하는 한편, 19세 미만 15세이상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용역 제공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당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용역제공 시간의 경우 사실상 성인기준으로도 전업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학습과 병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주당 용역제한 시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간 용역시간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과도한 촬영시간을 유발하고 있음. 또한 용역시간 제한을 규정하는데 있어 연령 구별을 15세 이상과 15세 미만으로만 하고 있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영유아 방송 출연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한편,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보호에 관한 규정이 전무함. 무엇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와 같은 청소년 보호규정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재 선언적으로만 머무르고 있음.
- 민변 아동위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법,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미디어 관련 단체와 함께 아동청소년연기자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연기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입법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046)
소관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제안일자 / 대표 발의 (소속정당)</p>	<p>(1) 2019. 8. 20. 민병두 (더불어민주당)</p>
<p>주요내용</p>	<p>(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정신질환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및 치료 지원에 대한 의무 신설</p> <p>(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제한을 다음과 같이 강화 10세 미만: 주 25시간 1일 6시간 15세 미만: 주 35시간 1일 8시간 19세 미만: 주 40시간 1일 9시간</p> <p>(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에 관한 재산권 신탁 규정 추가</p> <p>(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p>

나. 검토의견

- 아동에 대한 용역시간 구별을 현행의 두 단계에서 세 단계로 세분화 한 점은 최근 늘어나는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조치임. 또한 각 연령대별 용역시간 제한을 규정하는데 있어 주당 제한 뿐 아니라 일간 제한을 같이 규정함으로써 장시간 연속 촬영을 방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아울러 현재 규정이 미비하였던 정신건강에 대한 규정과 용역대금의 신탁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서 아동의 건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해당 법안은 그 동안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던 청소년 보호규정들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됨.
- 다만 용역 시간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음. 근로기준법의 경우 청소년 노동 시간에 관하여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

우 주당 35시간, 1일 7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15세 미만의 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하여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논란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에는 논란이 있으나 대중문화예술발전법의 취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유사한 보호를 하려는 데 있었음. 따라서 15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용역 시간제한 역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고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하더라도 더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 더욱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함. 실제로 청소년 연예인의 65.9%는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조사가 있음. 해외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을 규정하면서 학기 중과 방학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이를 참조하여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체계가 필요함.
- 한편 현행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다음날이 휴일이고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자정까지, 15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한 없이 용역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친권자 동의 등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야간촬영제한 규정이 사문화 되어 있음. 용역시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야간촬영 제한에 관한 규정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대상법안이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후적 치료보다는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함. 촬영 현장에서의 폭언 및 모욕적 언행의 금지 및 일정한 배역(폭력적 또는 선정적 장면) 및 행위(과도한 다이어트 요구 등)의 강요 금지와 같은 규정이 필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정책목표: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 ❖ 담당 검토: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

1. 현황 및 문제점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인격을 실현할 자유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 따라서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장소, 양태, 시간 등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의 내용을 구체화한 법률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외의 장소의 경우에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제한·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하고 있음. 이러한 제한은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향유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
- 특히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국회의사당(2013헌바322), 국무총리 공관(2015헌가28), 각급 법원(2018헌바137)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시민사회에서도 ‘집시법 제11조 폐지 공동행동’이 발족되어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고, 민변 집회의 자유 연구모임에서도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집시법 관련 토론회 참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재심청구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결합하고 있음.

2. 개혁입법과제

가. 현재 입법발의현황

법안명 (의안번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7660)
소관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일자 / 대표발의 (소속정당)	2017. 6. 29.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주요내용	<p>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 11조를 삭제함</p> <p>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수권 규정을 삭제하고, 제한통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경우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가한 경우로 최소화함</p>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1조는 청와대, 국회의사당, 법원 등 국가기관 주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권력기관을 향해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왔음. 이러한 이유에서 현행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바 전체적으로 조문을 정비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금지 장소 및 범위를 축소하거나 예외적 허용 사유를 두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음. 그러나 1) 조건을 두어 예외적으로만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방식은 경찰의 판단에 의해 집회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여전히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2) 비교법적으로 봐도 미국, 영

국, 일본, 독일 등의 각 국가들의 입법례에서 특정 장소 인근 지역의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현행법 제11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됨.

- 한편 현행법 제12조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이유로 경찰이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소통을 명목으로 집회 및 시위를 경찰의 자의적 판단 하에 전적으로 금지·제한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제재까지 가해진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사실상 집회 허가제를 운영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됨. 따라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제한통고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도 형사제재를 받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함 점에서 위 개정안은 조속한 입법이 필요함.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 발행일 2019. 11.
-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행인 김호철
- 담 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과 감시TF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사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